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19나20459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항소인 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 담당변호사 박재상

2. 망 D의 소송수계인

가. V

나. W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두환

변론 종결 2021. 4. 1.

판결 선고 2021. 6. 24.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합524226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 V, W의 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망 D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와 망 D 사이에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8. 체결된 매매계약을 163,367,3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V, W은 원고에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81,683,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에 대하여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 사이에 별지2 제1 내지 5항 기재 각부동산 및 제6항 기재 기계에 관하여 2017. 1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376,377,600원의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376,377,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 사이에 별지2 제1 내지 5항 기재 각부동산 및 제6항 기재 기계에 관하여 2017. 1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에게 별지2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등기소 2017. 12. 22. 접수 제80534호로 마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2 목록 제6항 기재 기계를 인도하라.

나. 피고 V, W에 대하여

주문 제3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A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다. 항소심계속 중인 2020. 8. 11. D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인 피고 V, W에게 소송수계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망 D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부분을 피고 V, W에게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축소 ·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C, 망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4. 5. 23.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420,000,000원, 보증기한 2015. 5. 22.까지로(이후 2018. 5. 18.까지로 연장되었다)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같은 날 A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건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E은행은 2018. 2. 5. 원고에게 A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A의 보증인으로서 2018. 4. 9. E은행에 425,971,47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위변제를 위한 법적 절차 비용(대지급금)으로 1,892,668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중 942,410원을 회수하여

대지금금 잔액은 950,258원이다.

다. A와 D 사이의 매매계약

A는 2017. 8. 8.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D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A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

A는 2017. 12. 4. 별지2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제6항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 등'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라 한다)를 피고 C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12. 22. 피고 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위 기계를 인도하였다.

마. D의 사망 및 피고 V, W의 소송수계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20. 8. 11. D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망D의 자녀인 피고 V, W이 있다. 피고 V, W은 2020. 11. 11.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느단542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21. 3. 9.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피고 V, W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17,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는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 망 D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거나 인도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 피고 C 및 망 D의 소송수계인인 피고 V, W은 원고에게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 1)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8. 8. 당시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다.
-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8. 8.과 2017. 12. 4. 당시 A의 적극재산가액의 총액이 소극재산 가액의 총액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A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 3)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A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망 D과 피고 C는 당시 A가 채무초과상태라거나 이 사건각 매매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취소 및 피고 V, W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와 망 D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 8. 8. 당시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아래 3.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는 E은행에 대한 채무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변제할 능력을 확보하지 못해 영업의 기초가 되는 토지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A의 소극재산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상회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으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8. 4. 9. 실제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의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여부

가)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포함),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F, G조합,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아산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감정인 L의 시가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

-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합계 1,728,290,200원(=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시가 531,921,440원 + 이 사건 제2 부동산 등의 시가 1,196,368,760원)
- ② A 명의 화물용 자동차 15대: 947,700,000원1)

[2017. 8. 8. 당시 A 명의 화물용 자동차인 것으로 확인되는 19대 중 4대2)는 지입차량으로

아산시청에 등록되어 있던 점,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8. 당시 해당차량의 지입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입차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지입차량의 경우 사업주인 A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 보기 어렵고,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4대3)가 아산시에 지입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지입차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7. 8. 당시 해당차량의 지입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내역을 찾아볼 수 없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차량들이 당시에 지입차량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적극재산 총액:2,675,990,000원(이 사건 각 부동산 등 가액1)

순번	차량번호	가액(원)	비고
1	(차량번호 1 생략)	35,000,000	을 제12호증의 1
2	(차량번호 2 생략)	35,000,000	을 제12호증의 2
3	(차량번호 3 생략)	50,000,000	을 제12호증의 3
4	(차량번호 5 생략)	49,000,000	을 제12호증의 5
5	(차량번호 4 생략)	105,000,000	을 제12호증의 7
6	(차량번호 6 생략)	125,000,000	을 제12호증의 8
7	(차량번호 7 생략)	95,000,000	을 제12호증의 9
8	(차량번호 8 생략)	12,500,000	을 제12호증의 10
9	(차량번호 9 생략)	115,000,000	을 제12호증의 12
10	(차량번호 10 생략)	14,200,000	을 제12호증의 13
11	(차량번호 11 생략)	18,000,000	을 제12호증의 14
12	(차량번호 12 생략)	49,000,000	을 제12호증의 26
13	(차량번호 13 생략)	58,000,000	을 제12호증의 28
14	(차량번호 14 생략)	79,000,000	을 제12호증의 29
15	(차량번호 15 생략)	108,000,000	을 제12호증의 30

2) 당시 차량번호 (차량번호 16 생략)(을 제12호증의 4), (차량번호 14 생략)(을 제12호증의 6),

(차량번호 17 생략)(을 제12호증

의 11), (차량번호 18 생략)(을 제12호증의 27) 차량

3) 당시 차량번호 (차량번호 ⑤ 생략)(을 제12호증의 5), (차량번호 ④ 생략)(을 제12호증의 7),

(차량번호 12 생략)(을 제12호증의

26), (차량번호 15 생략)(을 제12호증의 30) 차량

1,728,290,000원 + 화물용 자동차 가액 947,700,000원)

[피고 V, W은 위에서 인정한 적극재산 외에도 A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용 자동차 20대의 영업용 번호판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A의 대표이사 B의 아들인 피고 V명의로 화물용 자동차들과 배우자인 망 D 명의로 화물용 자동차는 A로부터 명의신탁되었거나 통정허위표시로 그 명의로 이전된 차량이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4, 17,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A가 보유하던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이 차량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으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V 및 망 D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A가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A의 자력으로 구입하였다는 등의 금융내역등을 찾을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 V, W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 V, W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들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A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

A는 2017. 8. 8. 당시 E은행에 대하여 1,027,000,000원4), M에 대하여 50,000,000원, N카드에 대하여 28,000,000원, O카드에 대하여 8,000,000원, J에 대하여 141,000,000원, P에 대하여 118,000,000원, Q에 대하여 22,000,000원, R에 대하여 133,000,000원, S에 대하여 152,000,000원, I에 대하여 129,000,000원, K에 대하여 110,000,000원, H은행에 대하여 85,000,000원, G조합에 대하여 840,000,000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

A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 총액은 2,843,000,000원(=1,027,000,000원 + 50,000,000원 + 28,000,000원 + 8,000,000원 + 141,000,000원 + 118,000,000원 + 22,000,000원 + 133,000,000원 + 152,000,000원 + 129,000,000원 + 110,000,000원 +

85,000,000원 + 840,000,000원)이다.

다)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A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의 합계는 2,675,990,000원이고, 소극재산의 합계는 2,843,000,000원이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A의 적극재산으로 산정된 화물용 자동차 중 일부에는 단독저당권 등이 설정되어있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A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성립여부

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쉬운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채무초과상태였던A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해 피고 V, W은, A가 A의 E은행에 대한 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거나 정당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이후 A가 E은행에 대한 채무37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을 제3,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1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각 대금은 E은행에 대해 변제한 채무액 370,000,000원을초과하는 530,000,000원인 점, ② A는 E은행에 채무를 변제한 이후 회사 영업을 통해채무 변제 자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회사 영업의 기초가 되는 이사건 각 부동산 등을 모두 매각하여 버렸으며, 결국 이듬해 폐업처리 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A의 E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는 그를 통해 회사를 되살리려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 보기 힘든 점, ③ A가 이 사건 제1 부동산 매각 대금 중 채무변제 후 남은 금액들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거나 공동담보로 보관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B에게 차용금 및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60,000,000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대금으로 A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 V, W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V, W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V, W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

피고 V, W은 망 D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 A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했고, A에게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2011다37001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D과 B이 2017. 8. 29. 협의이혼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 D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에 B의 배우자였을 뿐만 아니라, 2017. 6. 23.까지 A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A의 재정상태를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일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망 D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망 D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담보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A에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경위는 이례적이며 망 D은 A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V, W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D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V, W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441,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E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시가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E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망 D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지닌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11. 12. 현재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시가가 533,367,300원인 사실,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E은행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37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시가도 위 533,367,300원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그 시가에서 E은행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고 남은 163,367,300원(= 533,367,300원 - 370,000,000원)이다.

마. 소결론

사해행위인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위 163,367,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망 D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63,367,3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 이 사건이 계속 중인 2020. 8. 11. 망 D이 사망하였고, 2020.

11. 11.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망 D의 가액배상채무는 피고 V, W에게 그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었다.

따라서, 피고 V, W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81,683,650원(= 가액배상채무액 163,367,300원 × 법정상속분 비율 1/2)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A가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 12. 4. 이전에 이미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아래 4.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는 E은행에 대한 채무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변제할 능력을 확보하지 못해 영업의 기초가 되는 토지인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를 변제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A가 이 사건 제2 부동산 등을 매도하면 영업의 기초가 되는 자산들을 매각하는 것이 되어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갚을 능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점, A의 소극재산 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현저히 상회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8. 4. 9. 실제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의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A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

① 이 사건 제2 부동산 등: 1,196,368,760원

② A 명의 화물용 자동차 11대: 795,000,000원5)

[2017. 12. 4. 당시 A 명의 화물용 자동차인 것으로 확인되는 15대 중 4대6)는 지입차량으로

아산시청에 등록되어 있던 점, 2017. 12. 당시 해당 차량의 지입차주들이 유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지입차량인 점이 확인되므로 A5)

순번	차량번호	가액(원)	비고
1	(차량번호 1 생략)	35,000,000	을 제12호증의 1
2	(차량번호 2 생략)	35,000,000	을 제12호증의 2
3	(차량번호 3 생략)	50,000,000	을 제12호증의 3
4	(차량번호 4 생략)	105,000,000	을 제12호증의 7
5	(차량번호 6 생략)	125,000,000	을 제12호증의 8
6	(차량번호 7 생략)	95,000,000	을 제12호증의 9
7	(차량번호 9 생략)	115,000,000	을 제12호증의 12
8	(차량번호 11 생략)	18,000,000	을 제12호증의 14
9	(차량번호 13 생략)	58,000,000	을 제12호증의 28
10	(차량번호 14 생략)	79,000,000	을 제12호증의 29
11	(차량번호 19 생략)	80,000,000	을 제12호증의 31

6) 당시 차량번호 (차량번호 16 생략)(을 제12호증의 4), (차량번호 14 생략)(을 제12호증의 6),

(차량번호 17 생략)(을 제12호증

의 11), (차량번호 18 생략)(을 제12호증의 27) 차량

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량번호 ④ 생략)(을 제12호증의 7) 차량

또한 지입차량이라 주장하나, 2017. 12. 당시 유가보조금 신청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차량을 지입차량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량이 지입차량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적극재산 총액: 1,991,368,760원(토지 등 가액 1,196,368,760원 + 화물용자동차 가액 795,000,000원)

(피고 C는 위에서 인정한 적극재산 외에도 A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용 자동차 20대의 영업용 번호판과 A의 대표이사 B의 아들인 피고 V 명의의 화물용 자동차들과 배우자인 망 D 명의의 화물용 자동차는 A로부터 명의신탁되었거나 통정허위표시로 그 명의가 이전된 차량이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A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

A는 2017. 12. 4. 당시 E은행에 대하여 641,000,000원, M에 대하여 50,000,000원, N카드에 대하여 69,000,000원, J에 대하여 131,000,000원, P에 대하여 108,000,000원, Q에 대하여 19,000,000원, R에 대하여 125,000,000원, S에 대하여 141,000,000원, I에 대하여 115,000,000원, K에 대하여 104,000,000원, T에 대하여 104,000,000원, H은행에 대하여 79,000,000원, G조합에 대하여 840,000,000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

A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 총액은 2,526,000,000원(=641,000,000원 + 50,000,000원 + 69,000,000원 + 131,000,000원 + 108,000,000원 + 19,000,000원 + 125,000,000원 + 141,000,000원 + 115,000,000원 + 104,000,000원 + 104,000,000원 + 79,000,000원 + 840,000,000원)이다.

다) 채무초과 상태

2017. 12. 4. 당시 A는 소극재산의 가액 2,526,000,000원이 적극재산의 가액 1,991,368,760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채무초과상태였던 A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 C는 자신이 선의라고 항변하나,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C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7. 11. 14. A의 본점 소재지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화물알선 및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U를 설립하였는바, 피고 C가 A의 본점 소재지에서 A와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U를 설립하기 위해서 A의 동의를 받았을 것이며 A와 피고 C 사이에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는 2017. 12. 4.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위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8. 1. 16.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 C가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사해행위인 매매계약 체결 이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수익자로 변경된 경우 그 부동산 자체를 채무자 명의로 회복시키게 되면 수익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면서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되어 불공평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제2 부동산 등의 가액에서 G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 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든 증거들, 제1심 법원의 G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11. 12. 현재 이 사건 제2 부동산 등의 시가가 1,216,377,600원인 사실,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G조합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84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제2 부동산 등의 시가도 위 1,216,377,600원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2 부동산 등의 공동담보가액은 그 시가에서 G조합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고 남은 376,377,600원(= 1,216,377,600원 - 840,000,000원)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위 376,377,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376,377,6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원상회복청구인 가액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원상회복청구인 원물반환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V, W이 소송수계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맞추어 청구를 변경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의 주문 제3항을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설범식, 판사 이준영, 판사 박원철